

『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임춘구 의원

2. 제안이유

-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구미시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-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설치, 운용 및 관리(안 제3조~제6조)
-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(안 제7조~제10조)
-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및 지원농가(안 제15조~제16조)
- 생산비 및 최저가격 결정,고시(안 제18조~제19조)
- 지원금의 회수(안 제21조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, 제8조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, 제4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

5. 검토의견

□ 본 ‘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’ 은,

- 기금 조성을 위한 구미시의 예산 부담 증가와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조성에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예상되나,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 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, 농축산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농축산물생산비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경감코자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